



제 1561 호 고양시보

2019년 4월 16일(화)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 2019-110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 2019-113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1호(건설센터) 극한환경실험동]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고양시 고시 제 2019-11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4
고양시 덕양구 고시 제 2019-13호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변경(기간 연장) 시행허가 통보(고양지축지구 소하천공사)	9

공 고

고양시 공고 제 2019-923호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 일산서구청사 가감속차로) 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 공고	10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 2019-273호	공인 신조 공고	12

고양시 고시 제2019-110호

2019년도 4월 11일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019. 4. 12.

고양시장 이재준

■ 예산총칙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비 고	
계		2,572,583,070		
일반회계		2,044,240,016		
특별회계		528,343,054		
	공기업특별회계	285,395,17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0,036,73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5,358,434	
	기타특별회계		242,947,88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06,51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631,000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77,147,750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480,539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1,920,344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003,874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49,741,0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23,600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852,627	
		공유임야 특별회계	28,734,974	
		도시재생 특별회계	20,905,607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25,000,000		

고양시 고시 제2019 - 113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1호(건설센터):
극한환경실험동]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1번지 상의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1호)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합니다.

2019. 4. 16.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1호) 사업
-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극한환경실험동 증축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결 정	1	연구시설1	-	대화동 2311 일원	140,523㎡	
시 행	1	연구시설1	-	대화동 2311-1	41,348.6㎡	증축 연면적 2,981.8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
- 성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 한승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	면 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 관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1	대	41,348.6	41,348.6	제1종일반 주거지역	대화동 2311-1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고양시장

1. 고시내용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배경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여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

다. 참가현황 : 37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명
경기도, 거제시, 울주군, 남구(광주광역시), 보령시, 당진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라. 규약의 주요내용

- 협의회 목적, 명칭 및 주소, 구성, 조직(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협의회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협의회 운영세칙(제16조)

붙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① 이 행정협의회는 명칭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②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②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가 되지 않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서 제외된다.

제4조(조직) ① 총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두고 권역별 위원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2명 이상인 경우)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단체장이 해당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⑥ 총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국장으로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2.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여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조정을 요청하면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의 공통 관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분과
2. 그 외 분야는 총회에서 결정

② 각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으로 한다. 단,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각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그 업무담당 부서장(과장급)과 그 업무담당 직원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 ⑤ 실무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총회에 보고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② 필요시 사무국을 남북협력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그 밖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 분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경기도, 거제시, 울주군, 남구(광주광역시), 보령시, 당진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37개

소하천공사 시행허가(변경)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비 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소하천명 : 지정천
2. 시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대
(고양지축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고양지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소하천공사
 - 나. 공사개요
 - 하천공 : 소하천 1개소(지정천) 전 구간 L=1282m, B=3.5~18m
 - 호안공 : 식생매트(좌안 5,181m 우안5,057m)
자연석 쌓기(좌안 937m, 우안316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1층(논현동)
5. 하천공사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2019년 4월 15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 일산서구청사 가·감속차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면적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되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선: 일산서구청사 가감속차로)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1	3	35	주간선도로	2,930	대화동 2514	대화동 2340-1	일반도로	
금회 시행	대로	1	3	35	주간선도로	2,930	대화동 2514	대화동 2340-1	일반도로	당초: 896㎡ 변경: 94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성명: 고양시장(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면적	실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기정	1	대화동	2321	체	40,545.5	237		고양시				
변경	1	대화동	2321	체	40,545.5	289		고양시				
기정	2	대화동	2321-1	공	8,449.5	129		고양시				
변경	2	대화동	2321-1	공	8,449.5	129		고양시				
기정	3	대화동	2428	도	49,159.4	530		고양시				
변경	3	대화동	2428	도	49,159.4	530		고양시				
기정	합 계				98,154.4	896						
변경	합 계				98,154.4	948						

공 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12조(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의 명칭	인영(종직인)	인영(횡직인)
고양시덕양구청장인 성사1동전용		
고양시덕양구 성사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 공인의 등록 사유 : 통합민원발급기 신규설치

3.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5. 1.

4. 공고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19. 4. 12.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